

攷事撮要의 版種考

A Study on the Edition of Kosachalyo

金 致 雨 ☆

I. 緒 論

攷事撮要是 李朝 明宗9年(1554) 也足堂 魚叔權이 撰한 類書의 一種이다. 이것이 原撰 以後 英祖47年(1771) 徐命膺에 의하여 攷事新書로 大幅 改訂 增補되기가 12次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이루어졌으며, 그 中에는 手寫된 것만도 數種에 달하고 있다.

本書에는 李朝會社에 있어서 鄉大夫와 胥吏는 물론 巷居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응당 알아두어야 했던 事大交隣을 위시한 日常生活에 必要不可缺한 一般常識 따위가 收錄되어 있으므로 當時 會社事情을 아는 데 적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本攷事撮要가 오늘날 우리의 關心을 끌게 하는 것은 그러한 內容보다도 오히려 壬亂 以前의 各地方文化事情과 書誌研究의 一隅을 도우고 있는 冊板目錄이 收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本稿에서는 紙面關係上 冊板目錄에 관한 것을 省略하고, 攷事撮要의 諸板種에 대해서만 그것의 編撰經緯, 體裁 및 內容 등을 分析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II. 版 種

A. 壬亂 以前 版種

壬亂 以前에 刊行된 攷事撮要是 5種이 있다. 內容 및 體裁에는 大差가 없으며 모두 冊板目錄과 冊書市准이 收錄되어 있다.

1. 明宗9年 刊 原撰本

朝鮮 明宗9年(1554) 魚叔權이 撰하였는데 일찌기 刊本이 湮沒되어 자체 內容은 알 수 없다. 따라서 原撰의 編撰 經緯와 그 編撰의 底本으로 使用했던 諸文獻의 內容을 分析 檢討하고 壬亂 以前 刊의 現存 攷事撮要 諸 版種의 그것과 견주어서 輪廓의 이나마 그 內容을 復元시킴이 무엇보다도 先行의인 課題로 提起된다.

먼저 撰者 魚叔權의 人的 事實을 살펴 보면, 그는 李朝 中期의 學者로,

☆ 國立中央圖書司書課 (古書整理責任者)

號는 也足堂, 本貫은 咸從, 左議政 世謙의 庶孫으로 才學이 優精하였으나 庶孽出身인 까닭에 承文院에서 史文學官이란 下級官職을 고작으로 一生을 마친 文士로¹⁾, 그 生沒年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眉巖日記草 甲戌 5月 24日條에

「…魚叔權來謁 余問稗官雜記下卷起草如何…」²⁾

라는 記錄과 同年 7月 24日條에

「…魚叔權稗官雜記續集二卷 余覽過修改而還之 且遣漆扇 嘉其有關世教也…」³⁾

라는 記錄에 의해서 그가 宣祖7年(1574)까지 生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原撰本の 編撰 由來와, 그것이 明宗9年에 刊行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魚叔權의 序文에 의해 알 수 있으며, 그 序文은 現存의 諸版攷事撮要에도 거의 收錄되어 있다. 卽

「人之處世 動與事接 事有千萬種 而聰明有所不及 則 於臨事之際 不能無遺忘之患 理所然也 此事林廣記 居家必用之所以撰也 東方雖在一隅 上以事乎大 下以交乎隣 其他若公若私 不一其事自卿大夫 而至胥吏 以及巷居之士 各有所當知之事 必待攷閱典故然後 處之無疑矣 但事非一種而書亦汗牛 漉難可徵 頃年 有所謂帝王歷年紀者 又有所謂要集者 俱不知何人所撰 而歷年紀則所載太略 而頗涉於國乘 要集則詳於不必詳 而闕於不當闕 覽者恒用是病焉 叔權不揆不逮 據其兩書 廣攷故實 參以見行 而摘其最切者 聚爲一書 摠若干條 大要以事大交隣爲主 而以各種事次之 皆日用尋常之所不可闕者也 比於廣記·必用 則頗加簡要焉 編旣成 領議政沈相公 卽沈連源也 右議政尹相公 卽尹漑也 參判沈相公 卽沈通源也 都憲尹相公 卽尹春年也 見而可之 大提學鄭相公 卽鄭士龍也 發揮一二 命名曰攷事撮要 仍令鑄局印之 夫以龔瞽之撰 獲被五相公之藻鑑 至於印行 豈非萬一之幸乎 遂書梗概 俾後人知其所始 嘉靖甲寅至月日 咸從魚叔權序」⁴⁾

1) 中宗實錄, 卷82, 32年丁酉 4月 戊寅條.
光海君日記, 卷1, 元年戊申 2月 戊辰條.
英祖實錄, 卷2, 元年甲辰 12月 丙戌條.
朝野輯要, 卷9 補遺.

2) 柳希春, 眉巖日記草, 甲戌 5月 24日條.

3) 上揭書, 甲戌 7月 24日條.

4) 魚叔權 撰, 攷事撮要. 乙亥字本覆刻本. 宣祖9(1576)

魚叔權 撰, 朴希賢 改修. 攷事撮要. 庚午字體訓鍊都監字本. 光海君4(1612)

魚叔權 撰, 朴希賢 改修. 攷事撮要. 庚午字體訓鍊都監字本. 光海君5(1613)

위의 序文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攷事撮要是 中國의 事林廣記⁵⁾와 居家必用⁶⁾의 編撰 趣旨에 立脚해서 朝鮮의 帝王歷年紀와 要集을 根據로 하여 새로 故實을 廣發하고 그 當時 事情에 알맞는 條項을 添加하여 編撰 되었는데 事大交隣에 關한 것을 爲主로 하고 其他 日用에 關한 것을 附隨的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事大交隣에 關한 것을 爲主로 한 것은 撰者가 오랫동안 承文院에 職을 두고 있었으니 明과 關係되는 일에 밝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⁷⁾

攷事撮要의 編撰에 있어서 底本으로 삼았던 帝王歷年紀와 要集은 共히 撰者未詳의 圖書로 中宗 年間에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帝王歷年紀는 乙亥字로 印出되었는데 그 覆刻本을 李仁榮氏가 所藏하고 있었으나 現在는 行方이 杳然하다. 그의 紹介에 의하면 1冊本으로서 表題가 「盧氏家傳」이라 되어 있고, 板式은 四周單邊 半郭 20.2×14.5cm 有界 8行 15字 注雙行 黑口이며, 容內은 服五制式, 京外官相避, 誕日, 國忌, 奴婢決訟定限 등이 收錄되어 있다고 하는 바⁸⁾, 그 중 帝王歷年紀가 바로 魚叔權이 말하는 것에 해당됨을 짐작케 한다. 여기에는 宋의 嘉泰 4年(高麗 神宗 7年, 1204)條부터 明의 正德 7年(朝鮮 中宗 7年, 1512)條까지의 記事가 收錄되어 있다고 하니 그 乙亥字印本은 中宗年間에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이 年紀의 各年條에는 朝鮮朝 三百年에 걸쳐 歷史的 重要事項이 雙行으로 細注되어 있으나 그 記事가 너무 簡略하여 內容이 貧弱하다고 指摘되어 있다⁹⁾.

要集은 역시 李仁榮氏가 所藏하고 있었던 1冊本으로써 現在는 行方이 杳然하다. 그가 紹介한 바를 보면 版心에 「要集」이라 되어 있고 처음에 收錄된 「藥名」部分은 丙子字 所印의 四周單邊 半郭 17.3×11.7cm 有界 8行 15字 注雙行의 板式이며, 다음에 있는 「國忌, 誕日, 服制式, 奴婢決訟定限, 笞杖絞斬徒流收贖, 八道程送」 등의 部分은 甲辰字 所印의 四周單邊 半

魚叔權 撰. 李楨 改修. 攷事撮要. 乙亥字體訓鍊都監字本. 仁祖14(1639)

魚叔權 撰. 攷事撮要. 戊申字本. 顯宗15(1674)

魚叔權 撰. 攷事撮要. 印書體木活字本. 英祖 6—11(1730—35)

魚叔權 撰. 攷事撮要. 印書體木活字本. 英祖 19(1743) ※ 現存版으로 序文이 없는 것은 缺落된 것으로 보임.

5) 陳元靚. 事林廣記. 中國의 書類.

6) 海澄. 居家必用事類全書. 中國의 書類.

7) 未松保和. 前掲書, 解說 p. 3.

8) 李仁榮. 清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蓮閣, 1968. p. 5.

9) 李仁榮. “攷事撮要의 冊板目錄について”, 東洋學報 Vol.30 No.2. 昭和 18.5(1943.5) p.35.

部 13.0×11,4cm 有界 9行16字 注雙行의 板式이라 한다. 그 중 國忌에는 中宗 10年 3月 2日에 昇遐한 中宗繼妃 章敬王后가 있으며, 誕日에는 中宗 15年 世子로 冊封된 仁宗의 誕日이 2月 25日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本書 역시 中宗年間에 刊行된 것으로 여겨진다¹⁰⁾.

이와 같이 帝王歷年紀는 紀年의 取扱年代가 너무 長久하고 簡略하며, 要集은 그것이 처음부터 빠져 있다. 그러므로 攷事撮要의 編撰에 있어서는 紀年을 포함시키되 朝鮮과 關係가 없는 明 以前의 것은 削除하고 高麗 恭愍王 16年, 即 明太祖 洪武元年 以後의 것은 더욱 詳細하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原撰本과 大同小異할 것으로 생각되는 宣祖 1年 刊 乙亥字本攷事撮要를 보면 알 수 있다.

本書는 上記한 兩書 外에도 槐院의 掌故를 底本으로 하였다¹¹⁾.

이 原撰本의 版本은 活字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魚叔權의 序文에

「…大提學鄭相公 即鄭士龍也 發揮其一二 命名曰 攷事撮要 仍令鑄局印之…」

라는 記錄이 있는데 鑄局이란 鑄字所를 指稱하는 것으로 攷事撮要를 그곳에서 印刷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 原撰本이 活字本이라면 乙亥字本이 아니면 甲寅字本일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이 使用되던 活字는 乙亥字와 甲寅字이며 特히 壬亂 以前 刊 그외의 官撰 攷事撮要는 모두 乙亥字로 印出되었기 때문이다.

內容 및 體裁는 그 다음 刊本인 宣祖 1年 刊 乙亥字本과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宣祖 1年 刊의 乙亥字本을 볼 때 原撰本 編撰의 底本이 되었던 帝王歷年紀와 要集 所載의 項目과 同一한 大明紀年, 本朝忌辰, 誕日, 京外官相避, 笞杖絞斬徒流收贖, 奴婢決訟定限, 生藥每一兩國價値, 八道程途 등이 多數 收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宣祖 1年 刊 乙亥字本이 補充했으리라 여겨지는 大明紀年, 忌辰 및 誕日에 있어서 明宗 10년까지를 遡及 削除한다면 그 內容이 原撰本과 一致됨을 可히 推測케 할 수 있다.

2. 宣祖 1年 刊 乙亥字本

上下卷1冊 四周雙邊 半郭 22.9×16.9cm 有界 10行18字 注雙行 黑口 上下內向 2葉花紋魚尾縱橫 29.1×20.4cm. 現存 最古本으로 潤松文庫와 通文

10) 淸芬室書目, pp.279—280.

11) 魚叔權, 攷事撮要. 乙亥字體訓練都監字本. 李植跋에 「魚叔權 久爲學官 始輯是書 蓋就槐院掌故…」이 라는 記錄이 있음.

館에 所藏되어 있다. 澗松文庫本은 慶尙道「七日程眞寶」以下の 左下端부터 다음 紙葉의「七日程大丘」以下の 右下端까지「八日程居昌」以下「七日程宜寧」의 一部가 各各 破損되고「九日程昌原」의 次葉 以下 平安道 咸鏡道가 모두 缺落되었다. 通文館本은 上卷의 大明紀年에 永樂二十二年 壬寅 以前 9張半은 缺落되고, 下卷은 補寫인데 生藥每一兩國價値, 熟藥一服價値 및 八道程途內的 冊板目錄이 全部 빠지고 書冊市准에는 心經附注, 經國大典 및 聖學十圖 等 3種의 書名이 追加되어 있다. 그 外에도 本書를 轉寫한 寫本이 紹介되어 있다. 그것은 故宋錫夏氏의 舊藏本으로서 일찌기 李仁榮氏가 發表한 바도 있고¹²⁾, 또한 그 實物을 普成高等學校 圖書館에서 實査하였다고 하는데 筆者는 이를 引受한 澗松文庫에서는 아직 實査하지 못하였다.

刊年은 大明紀年이 隆慶2年(1568)까지 收錄되어 있고 本朝忌辰에는 明宗이 있으며 또 生日에는 宣祖2年에 王妃로 冊封된 懿仁王后가 없고 乙亥字로 印出된 點 등으로 미루어 보아 宣祖1年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事實은 또한 眉巖日記草 戊辰 2月 15日條에도

「…校書館唱准楊建來謁 餘引入接之…… 又攷事撮要時方摹印 所入冊紙一百張 餘以狀紙二卷十張爲付…」¹³⁾

라는 記錄이 있고, 同年 8月 22日條에

「…郭大方粧攷事撮要 以魚米酬其勞…」¹⁴⁾

라는 記錄이 보이며, 또 同年 9月 8日條에

「…楊建來受攷事撮要 改補而去…」¹⁵⁾

라는 記錄이 있음을 보아 더욱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本書가 宣祖1年 刊이고 보면 原撰者 魚叔權이 生存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補撰은 期必 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內容은 卷上에

大明紀年	中朝忌辰
本朝忌辰	生日
接待倭人事例	倭人朝京道路
接待野人事例	幹枝古號
馬色	六曹郎官所掌

12) 李仁榮. 東洋學報. p. 36.

13) 柳希春. 眉巖日記草, 戊辰 2月 15日條.

14) 上揭書, 戊辰 8月 22日條.

15) 上揭書, 戊辰 9月 8日條.

東西班散階

選擇

雜方

등이 실려 있고, 卷下에

服制式

京外官相避

笞杖絞斬徒流收贖

奴婢決訟定限

頒祿

書冊市准

生藥每一兩國價値

熟藥一服價値

八道程途

등의 次序로 收錄되어 있다.

그 中 大明紀年, 中朝忌辰, 接待倭人事例, 倭人朝京道路, 接待野人事例 등은 事大交隣에 관한 것이고, 本朝忌辰, 誕日, 六曹郎官所掌, 東西班散階, 服制式, 京外官相避, 笞杖絞斬徒流收贖, 奴婢決訟定限, 頒祿 등은 官吏의 必須不可缺한 知識이며, 幹枝古號, 選擇, 雜方, 書冊, 市准, 生藥每一兩國價値, 熟藥一服價値, 八道程途 등은 文士 또는 선비로서 알아 두어야 하는 常識에 屬한다.

3. 宣祖9年 刊 乙亥字本

上下卷1冊 四周零邊 半郭26.1×17.2cm 有界 10行18字 注雙行 黑口 上下內向 3葉花紋魚尾縱橫 33.1×21.8cm. 金完燮氏가 所藏하고 있는 唯一本이다.

本書의 撰者는 分明치 않으나, 아마 魚叔權 自身이 다시 補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書가 編撰되던 宣祖4年에도 魚叔權이 生存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刊年은 大明紀年이 萬曆4年(1576)으로 그치고, 本朝忌辰에는 宣祖8年(1575)에 昇遐한 明宗妃 仁順王后의 忌辰이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宣祖9年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內容은 宣祖1年 刊 乙亥字本과 大同小異하며 다만 中朝忌辰이 빠진 것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4. 宣祖9年 刊 乙亥字本覆刻本

上下卷1冊 四周雙邊 半郭22.8×16.8cm 有界 10行18字 注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混入2·3葉花紋魚尾) 縱橫26.6×19.8cm. 高麗大學校 圖書館에 上下卷 1冊이 所藏되어 있는데 序文은 없고 八道程途의 咸鏡道「二十二日程 鍾城」以下 1張이 落張이며 改張되어 있다. 그 外에도 延世大學校 圖書館에 上卷1冊이 있는데 그 곳에는 序文이 있다.

本書는 宣祖1年 乙亥字本을 覆刻한 것으로 大明紀年은 隆慶2년까지 收錄되어 있으나 本朝忌辰의 마지막에 界線上端을 없애고 宣祖8年에 昇遐한 明宗妃 仁順王后의 忌辰이 正月初二日이라고 小字로 追刻되어 있는 것을 보면 宣祖8年 以後에 刊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誕日에는 仁順王后가 王大妃殿이라고 하여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은 板刻이 完成된 後에 仁順王后가 昇遐해서 誕日에는 그대로 두고 便法으로 그렇게 追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書의 卷末에는 原來「萬曆 四年七月 日」이라고 되어 있고 行을 바꾸어「水標橋下北邊二第里門入 河漢水家刻板買者尋來」란 刊記가 있었으나 落張되었다. 그것은 三木榮가 朝鮮醫書誌에서 本攷事撮要를 發表하고¹⁶⁾ 그 刊記가 있는 마지막 張을 圖板으로 提示한 것에 의하여¹⁷⁾ 確認할 수가 있다. 이 刊記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本書는 宣祖9年(1576)에 刊行되었다. 宣祖1年 및 同9年 乙亥字本과 비교하여 보면 書冊市准에「心經附註」「經國大典紙」「聖學十圖 十二張」이 追刻되고 冊板目錄 中 宣祖9年 乙亥字本에서 追加된 平壤의 十九史略이 없는 반면 海州의 詩大文과 密陽의 唐鑑이 各各 追刻되었으며 또 羅州의「蒙△書」가「蒙訓書」로 補填되었다. 이것을 보면 같은 宣祖9年에 刊行한 乙亥字本보다 後에 刊行된 것으로 생각된다. 平壤의 十九史略이 없는 까닭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것은 宣祖9年 刊 乙亥字本을 보지 못하고 宣祖1年 刊 乙亥字本을 覆刻한 다음 獨自의으로 調査한 것을 追刻 또는 補刻한 것으로 보인다¹⁸⁾.

李仁榮氏는 本刻本の 名稱을 水標橋 附近에서 刊行되었다고 하여 水標橋本이라 하였다¹⁹⁾. 이것은 現在確認된 最古의 坊刻本에 該當한다. 金東旭氏는 坊刻本이 丙亂 以後 全羅道에서 發生하여 다시 京城으로 퍼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으나²⁰⁾ 本書를 보면 그렇지 않다. 金東旭氏 說에 대하여 응당 再檢討가 加해져야 할 것이다.

內容 및 體裁는 書冊市准에 3種이 追加되고, 冊板目錄에 있어서 1種이 없는 반면 2種이 追加되었으며, 板心은 上下內向黑魚尾와 3葉花紋魚尾가 混入된 것을 除外하면 宣祖1年 刊의 乙亥字本과 同一하다.

5. 宣祖18年 刊 本板本

上下卷1冊 四周雙邊(混入草邊) 半郭21.9×23.7×16.8×17.5cm 有界 10

16) 三木榮. 朝鮮醫書誌. 孔版本. 大阪, 三木榮家, 昭和 31 (1956) p. 328.

17) 上掲書, 圖版 p.17.

18) 千惠鳳. “귀중본해제 : 攷事撮要”. 도서관, Vol. 27 No. 8. 1972. 8. p. 64.

19) 李仁榮. 東洋學報. p. 37.

20)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誌; 한국서지사 연구, No. 11. 1970. p. 116.

行18字 注雙行 黑口(混入白口) 上下內向 3葉花紋魚尾(混入黑, 1.2葉花紋魚尾) 縱橫32.7×21.1cm. 魚叔權의 序文이 있고 書眉 書根 및 文中에는 順庵의 備忘手記가 있는 安鼎福의 手澤本이며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그 외에도 本書의 手寫本 上下卷 2冊이 釜山市立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體裁는 宣祖18年 本板本과 同一하나 界線이 없다. 年紀는 未詳이나 紙質이 깨끗한 점으로 보아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며 卷首에는 「黑川眞道藏書」「昭和 十年十二月十一日 釜山府會計ヨリ引繼」라는 印記가 있어 所藏傳來를 알 수 있다.

本書는 許筭이 續撰한 것으로 宣祖1年 乙亥字本을 覆刻하였으면서도 部分的으로 많이 增修하였다. 그 增修된 部分은 異筆로 追刻되어 있는데 그 것은 다음과 같다.

- 1) 大明紀年の 「萬曆元年癸酉」부터 「萬曆十三年乙酉」까지.
- 2) 中朝忌辰의 「悼靈肅皇后」 以下 「誕日」까지.
- 3) 「節序」
- 4) 八道程途에 있어서 「鎮川」의 「三日程」부터 卷下末까지.

특히 本書에 있어서 이상한 것은 大明紀年 中間에 「隆慶三年(1569)」 以下 「隆慶六年(1572)」까지의 記事가 漏落되어 있는데 그 理由는 알 수 없다.

版式도 區區多樣하며, 黑口上에는 「光陽」「坦然」「玉川」「眞一」「南平開刊」 등이 陰刻되어 있다. 그것은 刻手 및 開刊處로 解釋할 수 있으니 이것 역시 坊刻本임을 짐작케 한다²¹⁾.

續撰者 許筭은 宣祖16年 典翰으로 있던 中 上筭로 인하여 그 해 7월에 昌原府使, 그리고 9月부터는 甲山에서 流配生活을 하다가 同王 18年에 釋放된 일이 있는데²²⁾ 本書는 그 當時의 續撰으로 생각된다²³⁾. 이것이 許筭에 의해서 續撰되었다함은 李植 跋에

「…魚氏紀年止嘉靖甲寅 自己卯至萬曆乙酉 則故典翰許筭續編云…」²⁴⁾

이라는 記錄이 있고, 再造藩邦志 引用書目에도

「攷事撮要 魚叔權撰 許筭續」²⁵⁾

21) 千惠鳳. 前掲書, p. 65.

22) 宣祖實錄, 卷17, 16年癸未 7月 乙未條.

上掲書, 卷17, 16年癸未 9月 丁丑條.

上掲書, 卷17, 16年癸未 10月 庚午條.

上掲書, 卷19, 18年乙酉 8月 乙丑條.

上掲書, 卷22, 21年戊子 8月 丙寅條.

23) 千惠鳳. 前掲書, p. 65.

24) 魚叔權. 攷事撮要. 乙亥字體訓練部監本. 卷末.

25) 申昞. 再造藩邦志. 木活字本. 宋州, 肅宗 19(1693)

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確定된다.

刊年은 大明紀年에 나타난 바와 같이 宣祖18年(1585)頃に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忌辰에는 宣祖10年에 昇遐한 仁宗妃 仁聖王后가 있고 誕日에는 同25年에 世子로 冊封된 東宮, 即 後日의 光海君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本書는 宣祖 10年 以後이고, 同25年 以前인 宣祖18年에 刊行된 것이 立證된다.

內容은 上卷에 宣祖9年 乙亥字本에서 빠진 中朝忌辰이 다시 收錄되고 幹枝古號 다음에 「節書라는 項目이 新設되었으며 下卷의 八道程途內에는 冊板目錄에 많은 增補가 加해지고 있다. 本書에는 또한 「國譜」「三殿」「宗廟配享」「風俗」等이 補鈔挿入되어 있음을 特記한다.

B. 壬亂 以後 版種

壬亂 以後에 刊行된 攷事撮要是 7種이다. 이것들은 內容 및 體裁의 變化가 심하며 冊板目錄은 土產으로 代置되었고, 書冊市准은 仁祖14年 刊의 乙亥字體訓練都監字本에서 없어졌다가 顯宗16年刊의 戊申字本부터 書冊印紙數로 바뀌었다.

1. 光海君 4年 刊 庚午字體訓練都監字本

上下卷2冊 四周雙邊 半郭 26.2×18.1cm 有界 10行17字 注雙行 上下內向 3葉花紋魚尾 縱橫 34.2×23.1cm. 國立中央圖書館에 上下卷 2冊, 國史編纂委員會에 上卷 1冊이 所藏되어 있는데 後者의 것은 序文과 目次가 缺落되어 있다. 그리고 嶺南大學校 圖書館에는 下卷의 八道程道 部分만 있는 缺落本이 所藏되어 있다.

本書는 朴希賢이 그 當時 社會事情에 맞도록 改修한 것이다.

이 때에는 壬亂으로 말미암아 많은 文化財가 燒失되었으며 社會事情도 많이 달라졌다. 思想的으로 보면 倭亂時 明의 援助로 인하여 明에 대한 事大思想이 크게 대두되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 攷事撮要도 이에 맞추어 改撰하게 되었다. 本改修本은 金睟의 뜻에 의해서 朴希賢이 承文院瞻錄을 根據로 하여 編撰하였는데 宣祖18年 許篈 續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本書의 朴希賢 跋에²⁶⁾

26) 「判樞府金相公睟謂希賢曰 攷事撮要一書 最便於攷閱典故 不可一日無者 而兵燹之餘 板本散失 雖日用尋常之事 皆無所取徵 豈非覽者之病也 適得舊本於灰燼中 藏之者久矣 今欲用都監活字 而印之以廣其布 第紀年 止於萬曆乙酉而已 丙戌以後二十有七年 則蓋闕如也 君 久掌事大之文 採摭有據 幸爲我續撰 此實右台相公之意也 不可以文拙辭 遂抄院藏瞻錄 撰次成編 記事之例 一倣其舊 詳於詔刺者 重事大也 略於本朝者 秘時政也 壬辰以來 比舊加詳者 以天

「判樞府金相公暉希賢曰 攷事撮要一書 最便於攷閱典故 不可一日無者 而兵燹之餘 板本散失……第紀年 止於萬曆乙酉而已 丙戌以後二十有七年 則蓋闕如也 君 久掌事大之文 採摭有據 幸爲我續撰……遂抄院藏謄錄 撰次成編…」

라는 記錄을 보면 알 수 있다. 壬亂 以前本은 簡要한데 치우친 나머지 事大를 하는데 必要한 것을 빠뜨리고 있으며 또한 日用에 必要한 것을 너무 簡潔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事大를 하는데 必要한 中原進貢路나 大明官制를 새로 添加하고 日用에 必要한 選擇, 法制 및 雜方 등을 더욱 상세하게 다루었다.

本書는 庚午字體訓練都監字로 印出되었으며, 大明紀年이 萬曆 40년에 이르고 忌辰에는 光海君이 即位하고 나서 推尊한 宣祖嬪 恭聖王后가 있고, 誕日에는 光海君1년에 世子로 冊封한 東宮 祇와 同王3年 世子嬪으로 冊封한 嬪宮이 있음을 보면 本書는 光海君4年(1612) 訓練都監에서 刊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容은 새로운 項目이 많이 增加되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事大에 관한 것이 많아졌으며 日用에 관한 것이 더욱 자세하여졌다. 그 內容目次는 다음과 같다.

上 卷

大明紀年

中朝忌辰

本朝忌辰

誕日

※進貢方物數目

馬色

※中原進貢路程

※大明官制

※月支俸米

※文官服色

※武官服色

※文朝從享

※宗廟配享功臣

※本朝功臣名號

下 卷

接待倭人事例

倭人朝京道路

朝恤小之恩 我國事大之誠 不可不備載 而昭示於將來故耳 舊本所載各樣事件 頗務簡要 而未免有所闕遺 大要 以事大爲主 則進貢方物 中原貢路 大明官制等件 皆所當知 而不可遺者 如選擇 則凡有作爲 涓其吉凶 古亦有之 事非一類 各有所宜之日 其他若法制若雜方 亦不可不知 故加抄其若干條 添入於卷中 至於八道冊板 今則闕失 故並刪去 以土產代之 凡三閱月 而編始成 左議政李相公德馨 大提學李相公廷龜 略加刪潤 而定之 右議政李相公恒福 判樞府金相公暉 知樞府金相公信元 戶曹判書 黃相公愼 兵曹判書朴相公承宗 皆提調於訓練都監 覽訖 曰可 即入啓而印之 夫是書也 魚叔權 所裒集 如余者 安敢繼其後 重違諸相公之命 不揆其不似 敢此撰述 其或續此而不替者 不在於後之君子乎 萬曆紀元之四十年歲壬子七月上澣 通訓大夫行承文院校檢朴希賢謹跋」

接待野人事例	東西班散階
六曹郎官所掌	頒祿
幹支古號	節序
選撰	雜方
服制式	京外官相避
※給假式	※文武科榮親儀
※議親式	※敦寧式
※婚書式	管杖徒流收贖
書冊市准	生藥價
熟藥價	八道程途

여기에서는 奴婢決訟定限이 빠지고 ※의 表示가 있는 것이 新設되었다. 그 以前本에 있던 것도 內容自體에는 變動이 없으나 追加된 部分이 종종 있으며 그 一部가 다른 것으로 바뀌진 것도 있다. 一例로 八道程途는 그 以前本과 같으나 그 內에 포함되어 있는 冊板目錄은 土產으로 代置되어 있다.

2. 光海君 5年 刊 庚午字體訓練都監字本

上下卷2冊 四周雙邊 半郭 25.9×17.8cm 有界 10行 17字 注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縱橫 37.2×24.1 cm. 서울 大學校附屬圖書館 奎章閣圖書에 2部가 所藏되어 있는데 하나는 太白山史庫 舊藏本이고 다른 하나는 五台山史庫 舊藏本이며 모두 表紙裏面에는 萬曆 41年 9月 日附의 內賜記가 있다. 昭和 16(1914) 太白山史庫 舊藏本을 奎章閣叢書 第7輯으로 影印 刊行하였는데, 卷末의 末松保和 解說에 의하면 萬曆 41年本이 現存하는 最古本이며 攷事撮要를 6次에 걸쳐서 刊行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不充分한 考證임을 指摘하여 둔다.

本書는 역시 朴希賢이 改修한 것으로 萬曆41年(1613) 訓練都監에서 庚午字體訓練都監字로 印出되었으며 李爾瞻의 跋文²⁷⁾이 있다. 이것은 萬曆

27) 「攷事撮要一書 最便於攷閱典故 不可一日無者 而兵燹之餘 板本散失 雖日用尋常之事 皆無所取徵 豈非覽者之病也 訓練都監提調左議政臣李恒福 欲用都監活字 而印之 以廣其布 第紀年 止於萬曆乙酉 而丙戌以後二十有七年 則蓋闕如也 謂承文院臣朴希賢曰 久掌事大之文 採摭有據 幸積撰之 以備欠闕 希賢 遂抄院藏謄錄 次第成編 記事之例 一倣其舊 而壬辰以來 比舊加詳者 以天朝恤小之恩 我國事大之誠 不可不悉錄 而昭示於將來故耳 舊本所載 各樣事件 頗務簡要 而未免有所缺漏 大要以事大爲主 則進貢方物 中原貢路 大明官制等件 皆所當知 而不可遺者 如選擇 則凡有作爲 必須涓其吉凶 其他若法制若雜方 亦不可不知 故加鈔其若干條 添入於卷中 至於八道冊板 今則燒毀 故並刪去 以土產代之 凡三閱月 而編始成 先賜覆覽 特命大提學臣李廷龜 更爲刪潤 而定之 若倭情及天兵東征始末 則領議政臣李德馨 又加斤正 即選入啓 而印之 夫是書也 故學官臣魚叔權 所裒集 而希賢 增添撰述之功 其亦勳矣 萬曆紀元之四

40年本을 再刊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跋文에 나타난 本書의 刊行趣旨도 萬曆40年本 朴希賢 跋文과 同一하며 그것의 表現을 약간 바꾸어 놓은 정도이다.

本書의 內容은 萬曆40年本과 同一하고 體裁만 약간 다르다. 그 體裁를 보면 萬曆40年本은 目次가 2段, 3段 및 4段으로 되어 있고 每半葉이 10行이며 朴希賢 跋文이 있으나, 本書는 目次가 모두 2段으로 되어 있고 上卷 71張 前葉은 9行이고 後葉은 11行으로 되어 있으며 李爾瞻 跋文과 訓練都監諸臣銜名이 있다.

3. 仁祖14年 刊 乙亥字體訓練都監字本

上中下卷3冊 四周雙邊 半郭 22.6×16.5cm 有界 10行17字 注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縱橫 34.1×22.8cm.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奎章閣圖書에 2部, 同圖書館 일사·가람 文庫에 上中卷1冊, 그리고 國史編纂委員會에 下卷 1冊이 所藏되어 있다.

光海君4,5年本에는 僞勳과 誣獄이 記載되어 있고 또 그 以後에는 事件은 많았으나 記錄이 별로 없어서 崔鳴吉은 李植에게 命하여 本 攷事撮要를 續修케 하였다.

光海君時 특히 5年 以前은 大北이 小北을 逐出하고 自己派 勢力을 構築하는 일로 一貫되었다. 金直哉 誣獄²⁸⁾이나 癸丑獄事²⁹⁾ 등은 大北의 李爾瞻과 鄭仁弘 등이 小北을 제거하기 위하여 造作한 事件들이다. 이런 事件들이 있을 때마다 大北에게는 僞勳이 뒤따랐으며 自己派 勢力을 더욱 堅固히 하였다.

朴希賢 改修本은 바로 이 大北이 執權하고 있을 때 編撰되었으므로 自然히 僞勳과 誣獄이 記載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仁祖가 即位하고 나서 大北에게 피해를 입었던 崔鳴吉은 이것을 是正하고 朴希賢 改修本以

十一年歲舍癸丑五月下澣 効忠奮義翼社輸誠結義奮忠定運奮忠秉義決洪亨難功臣崇祿大夫廣昌君兼知春秋館事藝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世子右副賓客臣李爾瞻謹啟]

28) 光海君4年(1612) 兵曹의 文書를 僞造하다가 체포된 金景立의 發說에 의하여 子 百誠과 함께 反逆을 꾸민다는 혐의로 投獄되어 親鞫을 받았는데, 이 때 拷問에 못견디어 延陵府院君 李好閔, 佐郎 宋象仁, 郡守 丁好善, 觀察使 尹安性 등과 晉陵君을 받들어 反亂을 일으켜 鄭仁弘, 李爾瞻 등 大北派를 제거하려 했다고 虛僞陳述을 함으로 일대 獄事가 일어나 死刑 당하고 100餘名의 小北派가 처벌당한 事件.

29) 光海君5年(1613) 鳥嶺에서 銀商을 죽이고 強盜질한 徐羊甲, 朴應輝, 沈友英 등이 체포되자 鄭仁弘, 李爾瞻 등 大北派는 이들을 살려준다는 조건하에 金悌男의 私鑄로 永昌大君을 擁立하기 위한 賚金을 조달하고자 強盜질했다고 虛僞自白케 함으로 일대 獄事가 일어나서 金悌男이 賜死되고 永昌大君은 庶人이 되어 江華에서 죽음을 당했으며 小北派가 큰 타격을 받은 事件.

後에 있었던 事件들을 記載코자 李植에게 命하여 本書를 編撰케 한 것이 다. 그것은 李植의 跋에³⁰⁾

「…顧以在反正以前 其所載僞勳誣獄 不可以傳示後世 癸丑以後 事變尤多 而文書益佚 太學士崔公鳴吉 爲是懼 議于大臣及諸提調建淸 及今修正 以植叨列副席 遂以屬筆 植謹提調 商議既就雜記 更有所增減 又續紀年 自癸丑至乙亥…」

라는 記錄에 나타나 있다.

本書는 乙亥字體訓練都監字로 印出되었고 大明紀年이 崇禎8년까지 收錄되어 있으며 崇禎9년 李植跋이 있는 것을 보면 仁祖14年(1636)에 刊行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忌辰에는 仁祖10년에 昇遐한 宣祖繼妃 仁穆王后가 나타난 點으로 보아 仁祖10年 以後 即 仁祖14년에 刊行된 것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內容 및 體裁는 朴希賢 改修本과 大差가 없다. 그 改修本은 上下卷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 上卷의 大明紀年을 二分하여 上卷과 中卷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朴希賢 改修本의 中卷은 自然히 下卷으로 되어서 上中下卷으로 된 것이다. 卷數가 늘어난 것은 光海君4年 以後의 事件을 追加하고 未備한 것을 보다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內容의 變動을 보면 朴希賢 改修本의 月支俸米, 幹枝古號, 節序, 書冊市准, 生藥價 및 熟藥價 등이 빠져 있고 許筭 續撰本 以前에 있었던 奴婢決訟定限이 다시 收錄되어 있다.

本書는 明에 대한 事大에서 編撰된 것으로는 最後의 것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編撰되던 當時의 李朝社會는 激動期로 倭亂時 物必兩面으로 援助한 明에 대한 事大思想이 極에 이른 때였으나³¹⁾ 明은 이미 國運이 기울고 淸은 繁昌一路에 있었다. 明은 朝鮮 仁祖 22年 各地에서 일어난 農民暴動이 反亂으로 變하여 李自成이 北京을 陷落함과 同時에 毅宗은 自決하므로써 事實상 亡하고³²⁾ 그 후 命脈단을 유지하다가 朝鮮 顯宗3年(1662)에 全

30) 「魚叔權 久爲學官 始輯是書 蓋就槐院掌故 以存後考 旁及雜記 頗切於日用 而槩以事大爲主 且業已編年紀世 不得不兼採軍國事變 附見一二 而小擷大道 要爲未完之書也 然國家史乘甚秘 金匱石室之藏 非史官 莫之或窺 尚賴此書之行朝野 有所徵信 信乎不可一日無也 魚氏紀年 止嘉靖甲寅 自乙卯至萬曆乙酉 則故典翰許筭 所續編云 而光海朝校檢朴希賢 奉朝旨纂續記年 訖于壬子 雜記則多所增減 顧以在反正以前 其所載僞勳誣獄 不可以傳示後世 癸丑以後 事變尤多 而文書益佚 太學士崔公鳴吉 爲是懼 議于大臣及諸提調建淸 及今修正 以植叨列副席 遂以屬筆 植謹與提調商議 既就雜記 更有所增減 又續紀年 自癸丑至乙亥 則悉做魚氏之舊 不敢私有起例 嫌於史也 編既成 付訓練都監書局 用活字印出 而地部以時諱新紙費 繕印數百本 惜也 前本之在民間者 尚多 有欲正其謬者 當准此本編改可也 仍筆其事於後 崇禎丙子元月晦日 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知製教李植謹識」

31) 李基白, 國史新論, 서울, 第一出版社, 1965. p. 249.

32) 張廷玉 等奉勅修. 明史. 影印本. 上海, 中華書局, 民國 12(1923) 卷24 本紀24 p. 3.

滅하고 말았다. 明이 滅亡한 후에도 攷事撮要是 續撰되었으나 大明紀年은 明末까지 收錄하지 않고 崇禎8年 即 本李植改修本까지의 것을 그대로 踏襲하였다. 그러므로 本書에서 攷事撮要가 意圖하였던 바가 끝난 셈이 되는 것이다.

4. 顯宗15年 刊 戊申字本

上中下卷附錄合3冊 四周雙邊 半郭 24.4×16.7cm 有界 10行17字 注雙行 上下內向 2葉花紋魚尾 縱橫 32.7×22.1cm. 本書는 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所藏되어 있으며 魚叔權의 序文과 李植의 跋文이 있다.

本書는 戊申字로 印出되었다. 이것의 刊年은 誕日에 의하면 顯宗15年 2月 24日 以前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顯宗15年 2月 25日에 昇遐한 孝宗妃 仁宣王后가 王大妃殿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本書는 顯宗15年(1674)頃 校書館에서 刊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戊申字는 顯宗9年 8月 金佐明이 兵曹判書로서 禁衛營의 都提調를 겸하던 무렵 그가 軍門의 物資와 人力을 融通하여 銅으로 鑄造한 活字인데³³⁾ 同王 13年10월에 校書館으로 移送하였기³⁴⁾ 때문이다.

內容은 本書에서부터 一大轉換을 가져온다. 그것은 우리의 主權 侵入과 正統을 僭亂한 胡族인 淸에 대한 蔑視感 때문에 對淸關係 記事를 故意的으로 採擇하지 않고 仁祖14年 刊本の 對明關係記事를 그저 形式的으로 踏襲하는 反面 本朝關係에 치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本朝關係 記事를 全部 省고 새로운 項目을 더 添加하여 附錄1冊으로 獨立시켰다. 內容目次는 다음과 같다.

上 卷	
紀年	
中 卷	
中朝忌辰	誕日
※表箋狀式	※文書封進式
進貢方物數目	馬色
中原進貢路程	大明官制
省府州縣總數	各省道里
文官服色	武官服色
文廟從享	

33) 顯宗改修實錄, 卷19, 9年戊申 8月 辛未條.

34) 上揭書, 卷26, 13年壬子 10月 乙巳條.

下 卷

- | | |
|-----------|-----------|
| 接待倭人事例 | 倭人朝京道路 |
| 接待野人事例 | 東西班散階 |
| 六曹郎官所掌 | 頒祿舊制 |
| 京多官相避式 | 給暇式 |
| 文武科築親儀 | 議親式 |
| 敦寧式 | 婚書式 |
| 笞杖徒流收贖 | 奴婢決訟定 |
| 選擇 | 雜方 |
| 八道程途 | |
| 附 錄 | 誕日 |
| 本朝忌辰 | ※各道方物數目 |
| ※進賀箋式 | 功臣名號 |
| 宗廟配享 | ※外方職品 |
| ※各衙門品及所掌 | ※政官及凡相避式 |
| ※六曹所屬各司 | ※州縣春秋社稷癸儀 |
| ※大小科輿式 | ※州縣屬癸儀 |
| ※州縣春秋文廟奠儀 | ※鄉射儀 |
| ※州縣養考宴儀 | ※驛奴婢 |
| ※鄉飲酒儀 | ※量田法 |
| ※田結收稅式 | ※烽燧報准 |
| ※衙祿公須結數 | ※功議減等法 |
| ※笞杖收贖 | ※凡買賣限 |
| ※禁刑日 | ※決訟日限 |
| ※徵債法 | ※諸道漕轉 |
| ※公行往來分路 | 五服國制 |
| ※五禮儀婚書式 | 十二月古號 |
| 干支古號 | ※雜用俗方 |
| ※選擇諸方 | ※治霍亂 |
| ※痘瘡經驗方 | ※治癘疾 |
| ※治痢疾 | ※治中暑 |
| ※治胃腹痛 | ※辟瘟諸方 |
| ※治土疾及痰喘 | |

※救荒方	※飼征馬法
※經驗牧養方	※相良馬法
※辨駕馬法	※相旋毛法
※相壽夭法	※治馬眼骨法
※相耕牛方	※治牛疫方
※算數法	※書冊印紙數
※八道官職總數	

※의 表示가 있는 것이 새로 增加된 것이다. 朴希賢 改修本에까지 있던 幹枝古號, 節序, 그리고 李植 改修本에까지 있었던 服制式은 그 名稱이 干支古號, 十二月古號 및 五服國制로 各各 바뀌어졌다. 誕日은 中國과 朝鮮을 分離시켰다. 그러나 本書는 明이 滅亡한 후에 刊行된 것이므로 이미 마지막 王 毅宗은 死한 뒤여서 誕日 대신 忌辰이 記載되어야 하는데도 李植 改修本을 踏襲하여 誕日을 그대로 記載하고 있는 점이 特異하다. 朴希賢 改修本 所收의 書冊市准은 李植 改修本에 이르러 削除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대신에 書冊印紙數로 바뀌어졌다.

5. 肅宗16年 刊 木版本

上中下卷附錄合3冊. 日本 岡田氏가 所藏하고 있는데³⁵⁾ 國內에서는 實物이 發見되지 않고 있다.

古鮮冊譜에 의하면 木版本으로 刊行되었고 忌辰에는 肅宗14년에 昇遐한 仁祖妃 莊烈王后가 있으며 誕日에는 中殿이 空白이며 肅宗16年 6월에 世子로 冊封된 景宗이 東宮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³⁶⁾ 本書는 中殿이 없던 同王16年 6月 以後에 刊行된 것이다. 肅宗 6年 10月 仁敬王后가 昇遐한 後 同王7年 5月 仁顯王后가 王妃로 冊封되었으나 同王15年 5月 張禧嬪의 誣告로 廢妃되고 1年半 가량 후인 同王16年 10월에 張氏가 王妃로 冊封되었다. 그래서 肅宗 15年 5月에서 同王16年 10月 사이에 中殿이 없었는데 同王16年 6월부터 10월까지도 같은 中殿이 없었던 때이며 이 때가 本書의 刊年이 된다. 肅宗 20年 4月 甲戌事件으로 張氏가 沒落하고 仁顯王后가 復位되었을 때도 잠시 中殿이 없었으나 그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冊이 刊行될만한 時間的 餘裕가 못된다. 그러므로 本書는 肅宗16年(1690)에 刊行된 것으로 믿어진다.

內容은 實物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古鮮冊譜에 紹介된 바

35) 前問著作.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昭和 19(1944) 第1冊. p. 533.

36) 上掲書, p. 533.

를 보면³⁷⁾ 內容目次는 顯宗 15年頃 刊의 戊申字本과 同一하다.

6. 英祖 6~11年間 刊 印書體木活字本

4卷4冊 四周雙邊 半郭 21.3×14.2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上下內向 2葉花紋魚尾 縱橫 28.8×18.2cm. 魚叔權의 序文이 있으며 國立中央圖書館에 完帙이 있고 延世大學校 圖書館에 卷2가 있다.

印書體木活字로 印出되었는데 英祖19年 刊 5卷 5冊 攷事撮要和 同一한 活字이다. 記錄에 의하면 英祖19年本은 芸閣에서 刊行되었다고 하는데³⁸⁾ 本書도 역시 그 곳에서 刊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本印本은 당시 芸閣에서 保存하고 있던 金屬活字인 第二芸閣印書體字와 字形이 비슷한 印書體木活字이다.

刊年은 忌辰과 誕日에 의하면 英祖 6~11年(1730~35)間이 된다. 忌辰에는 英祖6年에 昇遐한 景宗繼妃 宣懿王后가 있고 誕日에는 東宮이 空白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東宮은 孝寧世子로 英祖1年에 世子로 冊封되었으나 同王4年 別世했으므로 空白이다. 그러나 英祖 3年 世子嬪으로 冊封된 嬪宮은 誕日이 12月 24日로 記載되어 있다. 世子嬪은 英祖 11年 賢嬪宮에 封해졌다. 莊獻世子는 英祖11年에 出生했으나 異復兄인 孝寧世子 卽 後日의 追尊王 眞宗이 夭折하고 英祖의 나이가 40歲가 넘었으므로, 出生한 다음 해인 同12年에 世子로 冊封되었다. 그러므로, 本書는 英祖 6年 宣懿王后가 昇遐한 후 同王11年 孝寧世子嬪이 賢嬪宮에 冊封되기 전에 刊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本書는 顯宗15年頃의 戊申字本 도는 肅宗 16年 木板本을 改撰한 것으로 項目이 많이 減하여졌으며 記事도 그것에 비하여 省減된 傾向이 있다. 이때는 淸과의 關係도 活潑하게 되어서 舊態依然한 攷事撮要의 增補는 必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本編과 附錄의 區別을 없애고 總4卷으로 하였다. 前記한 戊申字本이나 木版本은 本朝關係 記事를 附錄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그런 區別은 없애고 適當한 위치에 分散시켰다. 內容目次는 다음과 같다.

一 卷

紀年

37) 上揭書, p. 533.

38) 英祖實錄, 卷57, 19年癸亥 2月 己未條. 「…受敎 使兩館提學 主管刊印 攷事撮要 亦令芸閣 印出而…」

承政院日記 乾隆8年癸亥 3月 5日條. 「…上曰 攷事撮要 亦甚要緊之冊 芸閣爲之耶 漢詰曰 臣方兼芸閣 未聞此冊 之印出矣 咸中曰 頃年芸閣爲之…」

二 卷

中朝忌辰	事大表箋式
進貢方物數目	馬色
中朝路程	大明官制
省市州縣總數	各省道里
文武官服色	文廟配享
接待倭人事例	倭人朝京道路
本朝忌辰陵號	誕日
宗廟配享	功臣名號
東西班散階	外方品級
進賀箋式	方物數目
各衙門品級所掌	六曹所屬各司
六曹郎官所掌	給假式
儀親敦寧式	五服國制
婚書式	大小科擧式
州縣社稷祭儀	鄉射鄉飲酒儀
功議減等法	笞杖徒流收贖
禁刑日	奴婢田宅決訟限

三 卷

八道程道別號土產八道官職總數

四 卷

雜病經驗方及日用諸般俗方書冊印紙數

本書에는 新設된 項目이 없고 記入이 대체로 簡略한 것이 다른 점이다.

7. 英祖19年 刊 印書體木活字本

5卷5冊 四周單邊 半郭 21.6×14.1cm 有界 11行20字 注双行 上下內向2葉 花紋魚尾 縱橫 28.7×18.2cm. 魚叔權의 序文이 있으며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 全帙, 國立中央圖書館에 卷 1~2, 延世大學校 圖書館에 卷 3~4가 所藏되어 있다.

記錄에 의하면 英祖19年(1743) 芸閣에서 刊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本印本은 英祖 6~11年間 政事撮要처럼 당시 芸閣에서 保存하고 있던 第2芸閣印書體字가 아니라 字形이 稠密한 印書木活字이다³⁹⁾.

39) 金斗鐘,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考察”, 大東文化研究, Vol.4. 1967. p.49.
金斗鐘博士는 이에 대해서 “本印本은 芸閣에서 보존하고 있던 금속활자인 第2芸閣印書體

忌辰에는 英祖15년에 復位된 中宗妃 端敬王后가 있고 誕日에는 英祖12年世子로 冊封된 莊獻世子和 同王11年 賢嬪宮에 封해진 孝寧世子嬪이 있으며 同王20年 世子嬪에 冊封된 莊獻世子嬪은 空白이다. 이것을 보면 本書는 記錄에 나타난 대로 英祖19年 以後 同王20年 以前인 19년에 刊行된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內容은 誕日에 약간 變動이 있을 뿐 英祖6~11年間本인 4卷4冊本과 同一하고, 體裁는 그것의 第一卷을 兩分하여 全體를 5卷으로 하였다. 이 때 도 淸과의 關係가 活潑하던 때였으므로 舊態依然한 增補는 必要치 않아 그 以前 刊本의 內容을 踏襲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書는 明宗9年 魚叔權이 原撰한 以來 마지막 改修本이 된다.

Ⅲ. 結 論

以上에서 書誌研究나 國學研究에 貴重한 資料인 攷事撮要의 諸版種을 分析 檢討하여 그것의 編撰 經緯, 體裁 및 內容 등을 살펴 보았다.

攷事撮要是 李朝社會에 있어서 官吏와 在野의 선비에게는 사뭇 艱難한 日用的 類書였기 때문에 原撰 以後 英祖47年(1771) 徐命膺이 그 內容을 大幅 改訂增補하기까지 무려 12次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거듭되면서 간단 없이 上梓 廣布되었던 것이다.

原撰本은 일찌기 湮沒된 듯 하며, 그 以後에 刊行된 印本만이 傳存하고 있다. 壬亂 以前 刊攷事撮要의 內容은 다소의 出入이 있으나 大同小異하다. 그러나 壬亂 以後 刊攷事撮要에 있어서는 內容에 많은 差異가 있다. 對明關係를 維持하고 있던 때에 編撰된 仁祖14年 刊 乙亥字體訓練都監字本까지는 對明關係 記事가 大幅 增加되었으나, 明이 滅亡하고 난 後에 編撰된 顯宗15年 刊 戊申字本에서부터는 우리의 主權 侵入과 正統을 僭亂한 胡族인 淸에 대한 蔑視感으로 對淸關係 記事를 故意로 採擇하지 않고 仁祖14年 刊 乙亥字體訓練都監字本의 것을 形式的으로 踏襲하는 反面 本朝關係 記事를 大幅 增加시켰음이 特徵이다. 그 後 英祖時는 實學이 擡頭되어 從來의 典章之書가 會通全書 格의 編撰으로 옮겨가는 때였으므로, 攷事撮要로 이에 適應하기 위하여 선비로서 알아 두어야 했던 온갖 知識을 類集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攷事新書가 編刊되어 本書와의 前後身 關係를 맺게 되었다.

字가 아니고 第一芸閣書體字처럼 그 자형이 좀 적고 조밀한 司譯院木活字이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 芸閣의 사경으로 印出치 못하고 司譯院에서 代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Study on the Edition of Kosachalyo(攷事撮要)

by Chi-woo Kim

The Kosachalyo was the reference book which was composed of records collected about the procedures regulating the foreign relations or daily lives of the officials or the scholars, who had no official positions, in the Yi dynasty. The compilation work of the Kosachalyo was started from the date of the compilation of the original one by U sook-kwon(魚叔權) in the 9th year(1554) of King Myongjong(明宗). Su Myongung(徐明膺) revised and complemented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one in full scale, named it as the Kosashinsu(攷事新書) in the 47th year(1771) of King Yongjo(英祖). In that period, the original Kosachalyo was revised and complemented twelve times and republished. Until now, it has been said that the original Kosachalyo had been suffered the revising or complementing works six times or nine times. But in this thesis it is assured that it was revised or complemented twelve times in the period from 1554 to 1771 upon the various historical documents.